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성에 따른 심의 :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시형·추정완·우제창·오정균·안영하*

I. 서론

II.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성

III.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적용: 험프리스 연구 사례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심의에 필요한 윤리적 쟁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침습적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기준과 달리 사회행동과학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위험·이익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기밀성’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징, 그리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에 내재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보장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의 대중 노출’, ‘연구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의 축소’의 윤리적 문제를, 또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의 훼손’, ‘인간존중의 훼손’, ‘신뢰의 훼손’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진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윤리적 쟁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구하였다.

【색인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행동과학연구, 험프리스 연구, 참여관찰, 심층면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3R1A2A04014661)
** 김시형(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박사수료), 추정완(교신저자, 국립목포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우제창(국립목포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오정균(국립목포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안영하(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I. 서론

지난 2013년 2월 2일에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병원에서 시행하던 임상시험과 같은 침습적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 등 비침습적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 이하 ‘SBR’)에까지 심의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대학 IRB’)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병원 IRB’)와 달리 2013년에 전부 개정된 현행 법률의 시행과 함께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심의 내용 일반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윤리 정착 등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SBR을 포괄한 대학 IRB를 정착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연구의 특성이나 심의 내용 또는 심의 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연구 중심의 병원 IRB 심의 절차를 SBR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침습적 연구를 위한 심의 절차를 비침습적 연구에 원용하는 것은 사회과학 연구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¹⁾ 하물며 SBR 연구자들은 침습적 연구방법을 거의 사용 하지 않고, 설문과 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 IRB 수준에서 제안되고 있는 현재 대학 IRB의 심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²⁾

비록 지금까지 발전해 온 IRB 심의 기준이 보편적인 연구관련 국제규범으로 평가되는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CIOMS가이드라인’ 등의 윤리 원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별 또는 학문적 특성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대학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SBR 연구자들을 충분히 고려한 심의 내용과 절차의 마련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SBR의 심의 기준이 과연 어떠한 면에서 침습적 연구와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녔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은 우선 SBR이 연구대상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SBR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SBR의 주요한 윤리적 쟁점을 허버트 켈만의 연구에 근거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켈만은 위험·이익 평가 분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영역으로 ‘프라이버시와 기밀성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³⁾ 이러한 두 가지 쟁점영역은 앞서 제시한 SBR 연구의 세 가지 특성과 결합하여 주요한 윤리적 쟁점들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는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통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SBR의 특성과 켈만이 제시한 쟁점이 해당 사례에서 어떻게 주요한 윤리적 쟁점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Israel M.,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for Social Scientists*, 2nd ed., SAGE Publications, 2015, p.1.

2) Sieber J.E., Tolich M.B., *Planning Ethically Responsible Research*, 2nd ed., SAGE Publications, 2013, p.2.

3) Kelman H.C., "Ethical Issues in Different Social Science Methods", ed. by Beauchamp T.L., Faden R.R., Wallace R.J., *Ethical Issu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49.

II.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성

1.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영향력

SBR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문인가라는 개념 정의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SBR은 “사회 또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⁴⁾ 여기서 인간은 사회 속의 인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인간은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SBR은 인간 그 자체, 인간이 속한 세계 그 자체를 성찰하는 사유에 대한 지식인 철학과 구분되면서도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을 찾아가는 자연과학과도 다른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SBR은 19세기에 등장한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이 철학에도 적용된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SBR은 그 연구 방법을 철학적 검토방법과 같이 인간 그 자체를 자신의 속고와 내면의 진지한 성찰로 규정짓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SBR에서는 실험이 필요했고, 자연과학적 방법과 유사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내용을 정량화하는 기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SBR에서 양적 연구방법이 쓰이게 된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가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일반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방법이 목표로 하는 일

반화에 의해서 개인의 특성이 일반 속으로 숨겨지며 익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SBR에는 연구대상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SBR이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 사회는 수학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환원 불가능한 질적 측면이 상존해 있으며, 오히려 인간과 사회의 저변에 내재된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SBR의 본래적 영역일 수 있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SBR에서 인간과 사회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양적 접근법을 벗어난 질적 연구방법의 등장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질적 연구방법의 등장 초기에는 질적 접근이 인류학과 같은 소수의 학과에서만 사용하는 연구방법이었으나, 이제는 SBR의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에서 제기될 수 있는 SBR 위험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⁶⁾

따라서 본 장에서는 SBR의 연구대상이 ‘인간’인 만큼 이러한 인간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주요 쟁점은 SBR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아래서 연구참여자인 ‘개인’의 측면, 연구참여자와 SBR 연구자의 ‘관계’의 측면, SBR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다.⁷⁾ 여기서 개인적 측면은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관계적 측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가치적 측면은 ‘사회행동과학연구의

4) 김승현 · 윤홍근 · 정이환 공저, 『사회과학: 형성 · 발전 · 현대이론』, 박영사, 2016, 2면.

5)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한길사, 2014, 18면.

6) 본 논문에서는 연구 진행 단계 중 ‘자료수집’ 절차에 국한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구분하였다. 자료 수집이 모두 끝난 이후 분석 및 해석 절차에 진입하면 양적 연구방법에서도 분석한 자료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더 자세한 최창원, 『데이터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6-7면 참조.

7)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안절법에서 사용하는 연구 대상자라는 말 대신에 ‘연구참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참여자가 더 이상 연구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 생산에 함께 기여한다는 존중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함이다. 같은 취지의 글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아카데미프레스, 2013, 215-216면.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1)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interests)이란 연구의 맥락에서는 이득의 의미로도 쓰인다. 벨몬트 보고서에서는 이득(benefits)을 “건강, 또는 복지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⁸⁾ 이러한 이득은 해악(harm)과 대비되는데, 여기서 해악이란 ‘심리적·신체적 고통 또는 위해’를 일컫는다. 위험·이익 평가에서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 연구참여자의 이득은 높이고, 해악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취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왜냐하면 지속적인 피해가 연구 진행과정은 물론 연구 결과물로부터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절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는 설문 조사와 같은 경우 민감한 조사 항목들에 응답하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트라우마가 연상되면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양적 또는 질적 자료가 수집되는 동안에도 연구참여자는 심리적인 불편함과 경계심 등을 겪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기록되면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한 대중의 노출 위험을 염려할 수도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는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도 이해관심의 침해를 겪을 수 있다. 연구 결과물을 통해 대중으로 노출되지 않았어야 하는 연구참여자의 사적인 정보들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해악이 대표적인 것이다. 연구참여자인 개인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속의

개인이다. 그 개인의 정보가 대중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사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개인들로 구성되는 집단의 이익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해악은 연구대상의 특수성이 현저한 그룹, 가령 동성애자 연구와 같이 소수자연구 또는 죄수에 대한 연구와 같은 취약한 그룹의 다루는 연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 자료 수집은 양적 연구방법에서 비교적 손쉽게 취하는 익명화를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보호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¹⁰⁾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의 특성은 다른 아닌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연구에 임해야 한다. 이것은 벨몬트 보고서 등이 천명한 인간존중의 원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인간 존엄에 대한 신념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존중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연구일반에 있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보다 주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전문가이며 해당 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8) 구영모, 권복규, 황상의 공역, “벨몬트 보고서”, 『생명윤리』 제1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0, 10면.

9) Kelman H.C., 앞의 책(주 3), p.50.

10) 가령 질적 연구 전문가인 셰이드먼은 “내가 연구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글로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Seidman I., 박혜준·이승연 공역,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2013, 210면.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은 연구계획서와 연구참여자 설명서에도 충분히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SBR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신뢰 형성이 이른바 연구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기도 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 ‘면담’과 같은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라포(rapport)’ 형성이 연구를 위한 절차 속에 포함되기도 한다. 물론 이 라포 형성을 연구 시작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SBR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는 연구 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와 관련하여, 켈만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 관계에서 사회과학자들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BR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강압, 조종, 속임 등을 사용할 경우, 이것은 일시적으로 봤을 때 연구참여자들에게 단순한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 상호 관계의 전반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것은 곧이어 제시하게 될 세 번째 항목인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인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²⁾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사회 협력의 근본적 가치인 ‘도덕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연구참여자와의 좋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SBR은 자연과학 연구와는 다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¹³⁾ SBR의 ‘가치 관련성’은 비단 SBR 자체의 특성에만 반영된 것은 아니다.¹⁴⁾ 연구참여자가 SBR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연구참여자 개인은 자신의 연구 참여를 사회활동의 연장으로 삼고,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자신의 경험이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형성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참여자가 낯선 연구자의 가이드에 따라 연구를 믿고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연구참여자가 연구자로부터 강압, 조종, 속임을 지속적으로 당한다면 연구자에 대한 불신이 쌓일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하물며 연구자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통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연구참여자는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BR 심의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자에게 연구참여자를 배려하는 연구 설계를 고려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IRB의 심의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그 과정을 관료적이며 행정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11) 일반적으로 IRB 심의는 연구 시작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이미 시작하면 IRB에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 그런데 ‘라포 형성’은 연구 시작을 도와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라포 형성을 연구 시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12) Kelman H.C., 앞의 책(주 3), p.52.

13) 김승현 · 윤홍근 · 정이환 공저, 앞의 책(주 4), 18면.

14) 김병섭,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2010, 2판, 47면 이하

것이다. 물론 IRB의 심의 절차는 연구참여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¹⁵⁾

그러므로 연구자는 IRB 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가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다는 신뢰를 획득하는 확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의 지속적인 기대 효과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대한 신뢰 증진은 물론 SBR 참여의 기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슬러너에 따르면 신뢰는 “시민참여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한다.¹⁶⁾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는 SBR에 대한 신뢰는 연구 참여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신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협조와 타협의 유효유가 된다. 따라서 SBR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기는 하지만, 연구자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야기하는 예측 가능한 위험은 바로 연구참여자를 강압하고, 조정하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불신이다. 이러한 불신의 씨앗은 연구 자체를 가로막고, 사회적인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

2.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주요 쟁점

(1)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켈만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바로 그 본성 상, 정확히

그러한 개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험을 다룬다.”고 한다.¹⁷⁾ 여기서 프라이버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¹⁸⁾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벨몬트 보고서에서 ‘인간존중’의 원칙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벨몬트 보고서의 인간존중의 원칙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전제한다.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참여하려는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벨몬트 보고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프라이버시는 ‘공간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원칙이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자기만의 방’¹⁹⁾에서 근본적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모종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여기서 개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서 공간을 점유하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SBR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자가 불가피하게 연구참여자의 장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참여관찰은 연구참여자의 사적 장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에서는 앞서 살펴 본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15) Seidman I., 박혜준 · 이승연 공역, 앞의 책(주 10), 166-167면

16) 우슬러너 E.M., 박수철 역, 『신뢰의 힘』, 오늘의 책, 2013, 315면

17) Kelman H.C., 앞의 책(주 3), p.48

18)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돌베개, 2009, 93면

19) 버지니아 울프, 이미에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16, 70-71면. 이 책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울프는 18세기 이전에는 왜 여성 소설가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집안일이 전 부였고, 집안일과는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공간이 없음을 지적한다.

20) 이진우, 앞의 책(주 18), 193면

1) 연구참여자의 대중 노출

SBR에서는 연구 진행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익명성, 프라이버시, 기밀유지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선 익명성은 수집된 ‘연구 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에 관한 사항이다.²¹⁾ 즉, 수집된 자료에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그 자료는 익명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대중 노출이 된다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수집된 자료에 개인 식별 정보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의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즉 프라이버시는 연구참여자가 대중에게 밝히기 꺼려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이고, 기밀 유지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대중에게 노출시키지 않기로 하는 연구자의 의무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자의 의무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노출은 연구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만 국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끝나고 기록 및 분석하는 과정,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²²⁾ 따라서 연구자는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연구를 출판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연구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질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경우,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연구 진행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면담 또는 포커스 그룹 면

담(Focus Group Interview)은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특수한 ‘의미’ 발견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가 밀도 있게 진행될 수록 역설적으로(또는 비례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드러날 소지가 높다. 특히 누가 진술하였는지 중요한 연구인 경우에는 자료자체를 익명화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 유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다.

2) 연구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

현대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사회가 일종의 ‘투명사회’라는 것이다. 굳이 연구에서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도처에 깔린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시당하고 있다.²³⁾ SBR에서 고민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그렇다면 SBR이 문제 삼는 프라이버시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보호 주체인 개인이 지닌 이중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프라이버시를 지닌 구체적인 개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몰리나 자기의 방에 머물기를 원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연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²⁴⁾ 그리고 이런 자기표현 과정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자신을 통제하기 원하는데, 바로 여기서 SBR과 묘한 긴장관계가 촉발된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해서 연구참여자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연구참여자는 자기표현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켈만은 “연구참여자의 욕구와 연구

21) Sieber J.E., Tolich M.B., 앞의 책(주 2), pp.153-154.

22) 인터뷰 연구의 일곱 단계마다 윤리적 문제를 제시한 다음 글을 참조 바란다. Brinkmann S., Kvale S.,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3rd ed., SAGE Publications, 2015, pp.85-86.

23) Rosen J., *The Unwanted Gaze*, Vintage Books, 2001, p.3.

24) 어빙 고프먼, 진수미 역, 『자아 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2016, 292-296면.

자의 목표 사이에는 종종 내재된 긴장이 있는데, 연구 참여자가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동기, 태도, 행위 패턴, 또는 개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²⁵⁾

SBR은 그 연구 대상을 ‘인간’으로 정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SBR의 연구 대상은 개별적인 ‘인간’에 한정된 연구이면서 동시에 그 인간을 둘러싼 관계, 환경, 사회 등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는 연구이다. 따라서 SBR은 인위적으로 실험군과 통제군을 설정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통제군을 설정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통제당하기 쉬운 연구참여자, 특히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호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

3)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의 축소

SBR 연구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역설적이게도 SBR은 그것이 중요한 연구일수록 인간의 민감한 영역을 다룰 가능성이 높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해악의 발생 수준도 올라간다. SBR은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상태, 건강, 죽음, 종교, 민족, 정치, 돈,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사적 공간의 경계 내에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그룹과 사회적 장소들의 문제들을 불가피하게 탐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은 연구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질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연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면담은 그 목적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다기보다는 현상학에 기초해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연구참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하고, 연구 결과의 발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연구참여자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와 같이 그룹 면담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알게 된 프라이버시가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인간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 여기서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이다. 자율적인 인간이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숙고할 능력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다.²⁶⁾ 일찍이 이러한 자율적 인간의 존중을 위한 실천적 적용을 위해서 벨몬트 보고서는 동의 과정에서 ‘정보(information)’, ‘숙지(comprehension)’, ‘자발성(voluntarines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SBR에서는 연구 진행 과정상 연구의 타당성(validity) 확보를 위해서 속임(Deception)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속임이란 “연구 목적, 연구자의 정체성 또는 연구자의 자격, 연구 수행을 돕는 조건, 연구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경험, 연구의 용도와 결과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설명”을 말한다.²⁷⁾ 이러한 속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일반인들의 도덕상식에도 배치될 뿐더러 연구 참여 시에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에서 참여 관찰

25) Kelman H.C., 앞의 책(주 3), p.60.

26) 구영모, 권복규, 황상의 공역, 앞의 논문(주 8), 5면.

27) Kelman H.C., 앞의 책(주 3), p.49.

과 관련하여 ‘은밀한 연구(Covert Research)²⁸⁾ 역시 동일한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1) 의사결정능력의 훼손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아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구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속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디브리핑(Debriefing)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전문학회의 규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⁹⁾ 물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디브리핑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시킨 이후에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취지는 연구자로 수집에서부터 연구 종료까지 연구참여자의 의사 결정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려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참여자를 속여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연구참여자가 속이는 연구가 빈번해질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일반인들은 일상의 위협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수 있다. 실제로 1973년도 미국 워싱턴 대학의 캠퍼스에 총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학생도 사고를 당한 학생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그 사고가

실제 사고가 아니라 일종의 꾸며진 ‘실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⁰⁾ 비록 이러한 사례가 극단적이고, 해당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겪는 의사결정 능력은 일상의 위협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속임 연구 및 은밀한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

2) 인간존중의 훼손

인간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심의는 연구참여자들을 인간으로서 존엄한 목적으로 대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강조한다. 또한 IRB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비인도적 실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윤리의 근간인 윤리적인 심의과정이 고안된 이유는 연구에 ‘취약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착취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³¹⁾

그러나 속임 연구 및 은밀한 연구는 그 과정 상 근본적으로 도덕의 기본 원칙인 “인간 상호간의 솔직함, 선택의 자유, 상호성에 존중”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또한 연구자는 속임과 위장 관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연구참여자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연구참여자를 극단적으로 수단 삼은 대표적인 연구행위에는 독일 나치의 인체실험,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 등이 있다.³³⁾ 이러한 비인도

28) 은밀한 연구란 연구자가 완전한 참여자로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위장 관찰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가령 미국 사회학 협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윤리강령 12.05조 ‘연구에서 속임의 사용(Use of Deception in Research)’ 참조 <http://www.asanet.org/about/ethics.cfm>, 미국 심리학 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윤리강령 8.07조 ‘연구에서의 속임’과 8.08조 ‘디브리핑’ 참조 <http://www.apa.org/ethics/code/index.aspx>

30) Neuman W.L.,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Pearson Education, 6th, 2006, p.137

31) 김옥주, “제7장 취약한 피험자 연구윤리”, 서이중(편),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2013, 박영사, 184면

32) Kelman H.C., 앞의 책(주 3), p. 63

33) 터스키기 매독연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서이중,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 『사회와 역사』 제83집

적 연구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등장한 IRB는 칸트가 그의 정언명법을 통해서 강조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상기시킨다.³⁴⁾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수행된 연구라고 하더라도, 속임 연구 또는 은밀한 연구는 인간존중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신뢰의 훼손

속임 및 은밀한 연구가 문제되는 까닭은 SBR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신뢰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SBR 연구자는 연구 설계에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격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SBR은 SBR이 추구하는 연구 대상이 개인과 사회, 그리

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고, 신뢰는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III.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적용: 험프리스 연구 사례

앞서 검토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세 가지 특성과 주요 쟁점('프라이버시와 기밀성'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은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여섯 가지 윤리적 쟁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SBR 연구참여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목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켈만이 제안한 이러한 사항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윤리적 쟁점의 분류³⁵⁾

쟁점 영역	연구 영향의 유형들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프라이버시 · 기밀성	대중 노출	연구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의 축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 속임	의사결정능력의 훼손	인간존중의 훼손	신뢰의 훼손

이제 어떻게 이런 목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기 위해서 험프리스 연구를 예로 들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험프리스 연구는 IRB가 없었던 시절에 수행된 SBR 중에서 연구 가치는 상당하였으나, 연구과정에서 윤리적인 논란을 일으킨 까닭에 악명이 높다. 그런데 악명 높은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검토 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연구가 역설적으로 위험하다면, 그 위

험성 때문에 SBR을 기피한다거나 또는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해소하면서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로드 험프리스(Laud Humphreys)가 수행한 일명 '창집의 거래'³⁶⁾ 연구(이하 '험프리스 연구')는, 비록 최근에는 험프리스 연구를 재조명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³⁷⁾³⁸⁾ 미국 대다수 사회학 학부 교과서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위반, 은밀한 연구, 속임

(2009년), 187-221면 참조

34)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의 정초』, 아카넷, 2013, 148면

35) Kelman H.C., 앞의 책(주 3), p. 63에서 제시한 <표2.1>의 부분 인용

등을 사용한 비윤리적인 악명 높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³⁹⁾ 험프리스 연구가 비윤리적 사례로 인용되는 이유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이전이었다는 시대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험프리스 연구가 진행된 1960년대 중반은 벨몬트 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 시기였다.⁴⁰⁾ 그리고 각 전문학회 윤리 강령 역시 최초로 제정되기 시작한 시기였다.⁴¹⁾

그러한 시절에도 험프리스는 사회학자로서 충실하게 자신의 연구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였고 연구 과정을 꼼꼼히 기록 정리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험프리스가 어떠한 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험프리스가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어느 공원의 공중 화장실은 갑자기 퇴근 무렵이면 예상보다 많은 남자들이 붐빈다. 이들은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즉석 성관계(instant sex)’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이른바 ‘비인격적 성관계(impersonal

sex)⁴²⁾를 찾는 이유가 사회적이거나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와 같은 어떤 이유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비인격적 성관계의 현상은 지속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나 인간 상호작용의 형태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⁴³⁾

험프리스가 남자들의 비인격적 성관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었다.⁴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이다.

1. 참여관찰의 윤리적 문제

(1)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의 문제

참여관찰이란 “관찰가로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대상에 있는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의미한다.⁴⁵⁾ 참여관찰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관찰자로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관찰하는 기간, 관찰 장소, 연구참여자에게 관여하는 정도, 관찰사실의 노

36) Humphreys L., *Tearoom Trade*, Aldine Transaction, 3rd, 2008. 여기서 ‘찻집(tearoom)’은 남자 동성애자들이 즉석 성관계를 갖기 위해 사용한 ‘공중화장실’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아울러 ‘찻집의 거래’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상호 수락하는 은어이다.
 37) Sieber J.E., Tolich M.B., 앞의 책(주 2), p.67 이하; 앤서니 기든슨, 필립 서튼, 김미숙 외 6인 공역, 『현대 사회학』, 2014, 7판, 58-61면
 38) Galliher J.F., Brekhus W.H., Keys D.P., "7. The Legacy of Laud: Politics, Substance, and Professional Ethics", *Laud Humphreys: Prophet of Homosexuality and Sociology*, kindle e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4
 39) Valocchi S., [Book Review] *Laud Humphreys: Prophet of Homosexuality and Sociology*, *Great Plains Research* 16:2, Fall 2006, p.211,
 40) 벨몬트 보고서는 1979년에 작성되었다. 벨몬트 보고서 작성 연혁은 Jonsen A.R., "On the Origins and Future of the Belmont Report", ed. by Childress J.F. et al., *Belmont Revisited*,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5, p. 5 이하 참조
 41) Levin F.J., Skedsvold P.R., "32.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ed. by Emanuel E.J. et al,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338
 42) 여기서 비인격적 성관계란 성적 쾌락은 얻고자 하지만 정서적인 연대 또는 책임감, 친밀감을 갖고 싶지 않은 즉석 성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43) Humphreys L, "Tearoom Trade: Impersonal Sex in public places", *Society*, January 1970, Vol. 7, No. 3, p. 10
 44) Humphreys, 앞의 책(주 36), pp.16-44
 45) 김영천, 앞의 책(주 7), 270면

출 정도, 연구목적의 설명 유무 등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⁴⁶⁾ 만약 공공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구자도 관찰자로서 태도를 견지하며 익명의 대중을 관찰하겠다면 언뜻 보기에는 위험이 없는 듯하다.⁴⁷⁾ 그렇지만 이러한 관찰에서 관찰 도구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령 녹화를 하게 되면 위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녹화는 그 자체로 누가 찍혔는지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험프리스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과 관련하여 보면, 참여관찰은 대중 노출의 문제가 우려된다. 참여관찰에서는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찰 초점이나 주제가 광범위할수록, 관찰자의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내부자의 관점을 취할수록, 관찰자의 수가 많아지고, 연구 주제가 민감할수록 그 위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⁴⁸⁾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란 결국 연구 참여자 개인의 고유한 내밀한 영역인데,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단시간에는 자기표현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이 넘어가면 긴장이 풀려서 일상적인 진면모를 보여주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은밀한 관찰연구가 문제되는 이유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관찰당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한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험프리스가 남자 동성애자를 연구하던 1960년대 중반의 미국의 분위기는 동성애가 불법이었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시절이었다. 이 시절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대중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에게조차

도 비밀로 하던 시절이라는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대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험프리스 연구는 위장된 은밀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 즉 험프리스는 자신이 사회학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공중화장실에 오는 사람들은 험프리스도 자신들과 같은 이유로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게 하였다. 험프리스는 경찰들이 급습할 경우를 대비하여 '망보는 사람(Watchqueen)' 역할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에서 비인격적인 성행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⁴⁹⁾ 이러한 은밀한 연구는 연구자가 완전한 참여자로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위장 관찰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관찰함으로써 그 자체로 연구참여자를 수단화시키고 있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위장된 연구가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험프리스 연구 발표 이후 비판자인 워릭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연구참여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인간의 자유는 "성찰적인 선택들을 형성하고, 이와 같은 선택들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기회, 장려"로서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⁵⁰⁾ 그런데 워릭에 의하면 험프리스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자유를 빼앗은 행위가 된다.

은밀한 연구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시에버와 토리호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은밀한 연구가

46) 참여관찰과 관련된 스펙트럼 도표는 Patton M.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4th ed., SAGE Publications, 2015, pp.356-357 참조

47) 이런 취지에서 공공장소에서 익명의 대중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사회학 협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윤리강령 11.02조 '기밀성의 한계'의 (c)항 참조 <http://www.asanet.org/about/ethics.cfm>

48) 연구주제가 민감할수록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Levin F.J., Skedsvold P.R., 앞의 책(주 41), p.343 참조

49) Humphreys L., 앞의 논문(주 43), p. 15

50) Humphreys, 앞의 책(주 47)에 실린 Warwick D.P., "Tearoom Trade: Means and Ends in Social Research", p.195

불가피한 경우를 지적하면서 은밀한 연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⁵¹⁾ 예를 들어, 윌리엄 화이트의 *Street Corner Society*는 보스턴 슬럼가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갱단을 연구한 인류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지만,⁵²⁾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은밀한 연구였다. 또한 앤서니 기든슨 등도 험프리스가 연구 진행 과정 매 순간에 솔직했더라면 연구가 과연 진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⁵³⁾

험프리스 연구의 가치는 이 연구를 통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을 깨었으며,⁵⁴⁾ 오늘날 주요 쿼어 이론의 토대를 제공하였다.⁵⁵⁾ SBR의 연구 목적은 이렇게 그 연구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증진시킨다. 또한 SBR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구일수록 지식성장론 관점에서는 좋은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⁵⁶⁾ 험프리스 연구 수행 당시에는 IRB 심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는 것이 대해서 이 연구가 주는 사회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험프리스 연구와 같이 연구 가치가 높지만 한편으로 은밀한 연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위장된 연구는 거짓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반 연구참여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연구를 진행해야하는 연구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은밀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연구가 종료된 적절한 시점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디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디

브리핑이 불가능하다면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경우에 연구참여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한편 질적 연구방법은 특수한 커뮤니티를 연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익명화되더라도 연구참여자가 속한 커뮤니티가 낙인찍힐 우려도 감안하여 이 경우에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명 등을 사용하여 연구 발표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적연구 전문가인 패튼은 참여관찰의 열 가지 스펙트럼을 SBR 영향력의 세 가지 측면에 따라서 다음의 <표2>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은 ‘관찰기간, 관찰 장소, 관찰 초점, 현장의 돌발성 정도’로 재분류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는 ‘관찰자의 역할, 연구 진행 과정의 협력 정도, 내부자 관점 및 외부자 관점, 연구참여자에게 관찰자의 역할 공개 정도, 관찰자의 수’로 재분류하고,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는 ‘주체의 민감도·논쟁의 정도’로 재분류하였다. 참여관찰이 질적 연구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표2>와 같은 점검목록이 있으면 연구 설계를 할 때 SBR의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51) Sieber J.E., Tolich M.B., 앞의 책(주 2), p.71

52) Whyte W.F., *Street corner society :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6th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pp.299-309

53) 앤서니 기든슨, 필립 서튼, 김미숙 외 6인 공역, 앞의 책(주 37), 60면

54) Sieber J.E., Tolich M.B., 앞의 책(주 2), p.68

55) Galliher J.F., Brekhus W.H., Keys D.P., 앞의 책(주 49), "4. Published Criticism and Use of Tearoom Trade".

56) 김병섭, 앞의 책(주 14), 67면 이하

<표2> 참여관찰의 열 가지 스펙트럼과 위험 가능성의 정도⁵⁷⁾

참여관찰의 열 가지 스펙트럼	←—————→		
관찰 기간	일회성 관찰, 단일장소, 급한 수색	몇 시간 또는 여러 번 진행	장기간 (몇 년)
관찰 장소 ⁵⁸⁾	물리적 세계	부분 물리적 세계, 부분 가상세계	가상세계: 온라인
관찰 초점	협소한 초점 : 단일 대상	복수 대상	포괄적 초점
현장의 돌발성 정도	고정된 초점과 과정 : 미리 결정된 자료 수집	부분 고정, 부분 돌발성	고도의 돌발성 : 개방 물음
관찰자 역할	방관자적 관찰	부분 참여관찰	완전 참여관찰
연구 진행 과정의 협력 정도	참여 없이 관찰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지시되는 문의	부분 참여적 문의	고도로 참여적 문의
내부자 관점 및 외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	균형	내부자 관점
연구 참여자에게 관찰자의 역할 공개 정도	완전 공개	부분 공개	비밀 : 비공개
관찰자 수	단독관찰	단독관찰과 공동관찰의 혼합	공동관찰
주제의 민감도, 논쟁의 정도	단순한 주제 : 민감하지도 논쟁적이지도 않음	부분적으로 민감한 주제	고도로 민감한 주제 : 잠정적으로 논쟁거리
위험의 가능성 정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2. 심층면담의 윤리적 문제

(1)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의 문제

험프리스는 참여관찰을 통해서 왜 남자들이 비인격적인 성관계를 맺는지 알고자 했다. 그래서 몇몇 남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험프리스는 심층면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온 사람들

의 자동차 표지판을 기록하고 교통부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찾집에 온 사람들의 주소를 얻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마치 사회 건강 조사의 면접원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였다. 특히 험프리스는 공중화장실에서 망보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변장까지 해서 가정 방문 심층면담을 실시한 것이다.⁵⁹⁾

여기서 심층 면담이란 “흔히 피면담자의 삶과 경험

57) Patton M.Q., 앞의 책(주 46), pp.356-357 : 패튼이 제시한 열 가지 스펙트럼 항목을 사용하되,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측면에 따라서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58) 관찰 장소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연구방법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사적 공간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의 과급력, 자기표현을 넘어서는 자기방어의 취약성의 증대, 사적 공간의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을 문제 삼아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59) Humphreys L., 앞의 논문(주 43), p. 15

과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심층면담의 장점은 참여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섬세한 의미발견에 있다. 즉 심층 면담의 근원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⁶¹⁾ 험프리스가 참여관찰 이후에 공중화장실에 찾아오는 남자들이 내밀한 생각에 대한 의미 발견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다. 그런데 험프리스처럼 속임이 수반한 연구는 프라이머시와 기밀성과 관련한 문제를 유발한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가족에게서 조차 숨기고 싶은 동성에 성향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서 위험을 증가시킨다. 진정한 연구 목적을 연구참여자들이 알았다라면, 그들은 스스로 연구에서 표현한 내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실한 연구 목적을 모를 경우에는 연구참여자가 자기 표현 조절 수위를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대중에게 연구결과가 노출된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이 축소될 우려도 생긴다.

험프리스는 비인격적인 상관계라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험프리스 연구 사례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심층면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녹음이 필수이고, 녹음 한 내용을 다시 전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여기서 생성되는 연구자료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버와 토리흐는 민감한 사안을 연구하는 경우 IRB에서 반드시 ‘비밀준수서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⁶²⁾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험프리스는 자신의 연구 목적을 충분히 밝히지 않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험프리스와 같은 행위를 ‘속임’이라 한다. 속임 연구가 항상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 설계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온전히 전달하면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심리학에서 수행하는 몇몇 연구들은 인간의 인지와 반응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을 설명해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험프리스 연구가 연구 자체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속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벨몬트 보고서가 제안하는 조건에 따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험프리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공개가 진정으로 필요했는지 검토해 보자. 험프리스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이 연구 주제는 그동안 사회학에서 회색지대로 알려진 남자 동성애와 관련된 연구였다. 당시에는 동성에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목적을 진실하게 밝혔더라면 과연 험프리스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두 번째로 최소한도 이상의 위험 가운데에 연구참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이 없는지 살펴보면, 험프리스는 사회 건강 설문 조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연구참여자의 집으로 방문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인 자신에게 최소위험 이상의 위험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험프리스 연구에서는 디브리핑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까지 보면 험프리스 연구는 부득이하게 속임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연구였다. 따라서 디브리핑 절차를 마련하고 디브리핑을 통해서 참여 여부를

60) 김영천, 앞의 책(주 7), 323면

61) Seidman I., 박혜준 · 이승연 공역, 앞의 책(주 10), 31면

62) Sieber J.E., Tolich M.B., 앞의 책(주 2), p.74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험프리스와 같은 연구도 오늘날 IRB에서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2장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윤리적 쟁점들은 <표3> 과 같이 SBR에서 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SBR 설계 점검 목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목록의 윤리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을수록 우리

는 그 연구가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IRB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연구

쟁점 영역	연구 영향의 유형들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해당 여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관계	해당 여부	SBR의 사회적 가치	해당 여부
프라이버시 기밀성 보호	대중 노출	X	연구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	X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 축소	X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의사결정 능력의 훼손	X	인간존중의 훼손	X	신뢰의 훼손	X

IV. 결론

근래 국내에서 SBR과 관련된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자생적 또는 자율적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개정된 생명윤리안전법의 시행으로 인해 연구 필요성이 요구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의 SBR 연구방법론과 관련한 자료나 연구 성과물들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켈만이 제기한 미국 사회의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윤리적 쟁점들, 특히 사회과학연구의 특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등이 이제 국내의 SBR연구에서도 보다 상세하게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켈만의 논의를 참조하여 SBR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 SBR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BR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인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SBR의 주요한 윤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문제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SBR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SBR의 주요 쟁점을 결합하여 여섯 가지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여섯 가지 윤리적 쟁점들이 어떻게 사회과학연구에서 드러나는지, 험프리스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SBR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의된 SBR의 윤리적 쟁점 사항들은 기존의 침습적 연구에 대한 접근법과 양상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비록 본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SBR의 어떤 확정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지라도, 본 논문의 검토가 현재 법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SBR 논의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SBR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를 위한 윤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상세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Abstract】

A Review on Character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 : Analysis of Humphreys study

Kim Si-hyeong · Choo Jung-wan · Au Chung-kyoon · Woo Je-chang · An Young-ha*

This article aims at inquiring ethical issues required for reviewing Social Behavioral Research(SBR) to establish stably Institutional Review Boards(IRB) instituted within universities based on the entirely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Unlike the existing review criteria of IRB focusing invasive researches, SBR necessitates more careful approach in three aspects: ‘interests of participa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s’, and ‘social values of SBR’. In addi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and deception’ can be critically considered for assessing risk and benefit analysis on SBR.

Accordingly, this article seeks reviewing such characteristics of SBR and ethical issues within important components required for conducting a research. In particular, the article addresses ethical issues including ‘public exposure of participant’, ‘reduced control over self-presentation of participant’, and ‘reduction of participant’s private space’ with regard to task to ensur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examines those of ‘impaired capacity for decision-making’, ‘deprivation of respect’, and ‘erosion of trust’.

Besides, the article examines how these ethical issues have revealed through the case of Laud Humphreys’ Study, a typical example of SBR, and makes suggestions for alternatives to those issues.

Key words: Institutional review board, Bioethics and Safety Act, Social behavioral research, Humphreys' study,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투고(접수)일(2016년 5월 10일), 심사(수정)일(1차: 2016년 6월 2일, 2차: 6월 22일), 게재확정일(2016년 6월 28일)

* Kim Si-Hyeong (1st Author, Ewha Womans University), Choo Jung-Wan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Auh Chung-Kyoon (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Mokpo National University), Woo Je-chang (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Mokpo National University), An Young-Ha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Mokpo National University)